

조현중 특허법 기출문제집 정오표(2022. 4. 20. 시행 특허법 개정 반영 전)

순번	쪽	문제 번호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1	216	19	⑨) (특허법 제67조의2 제2항)	⑨) (특허법 제67조의2 제3항)	오기수정
2	250	11	① ② IOI	<p><u>① IOI 1,500만원 [(침해자 양도수량 15,000개 - 공제수량 0개) ≤ Max 수량 15,000개] x 배타권자 이익액 1,000원 + [공제수량 0개 + Max 초과수량 0개 - 실시권 설정 불가 수량 0개] x 10,000원 x 0.05</u></p> <p><u>② IXI 1,250만원 [(침해자 양도수량 15,000개 - 공제수량 0개) ≤ Max 수량 10,000개] x 배타권자 이익액 1,000원 + [공제수량 0개 + Max 초과수량 5,000개 - 실시권 설정 불가수량 0개] x 10,000원 x 0.05</u></p> <p><u>③ IXI 1,500만원 [(침해자 양도수량 15,000개 - 공제수량 0개) ≤ Max 수량 20,000개] x 배타권자 이익액 1,000원 + [공제수량 0개 + Max 초과수량 0개 - 실시권 설정 불가 수량 0개] x 10,000원 x 0.05</u></p>	오기수정
3	269	2	④ 특허된 후 특허법 제25조에 따라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된 경우는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한다.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는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(특허법 제133조 제3항). 정정심결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경우가 아닌 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정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(특허법 제133조 제6항 단서 팔호).	④ 특허된 후 특허법 제25조에 따라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된 경우는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한다.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는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(특허법 제133조 제3항). 정정심결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경우가 아닌 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정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(특허법 제136조 제7항).	오기수정
4	289	7	⑤ 특허법 제91조 제2항 단서	⑤ 특허법 제90조 제2항 단서	오기수정
5	313	18	① ... 제3자가 업으로서 그러한 소모품 내지 부품을 생산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는 등의 경우에 특허법 제127조 제2항 소정의 간접침해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, ...	① ... 제3자가 업으로서 그러한 소모품 내지 부품을 생산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는 등의 경우에 특허법 제127조 제2호 소정의 간접침해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, ...	오기수정

--	--	--	--	--

본 기출문제집은 하기 개정법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스쿨에서 "조현중 특히 개정법 특강" 강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[추후보완사유 완화] 특허출원인,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(개정법 제 16 조 제 2 항, 제 67 조의 3, 제 81 조의 3).
2. [불복기간 30 일에서 3 개월로 확대]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사의 청구기간 늘림(개정법 제 52 조 제 1 항 제 2 호, 제 53 조 제 1 항 제 1 호, 제 67 조의 2 제 1 항, 제 132 조의 17).
3. [재심사청구 대상 확대] 특허결정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 받기 전까지 재심사청구 가능(개정법 제 67 조의 2 제 1 항, 제 3 항).
4. [기존 판례 결론이 가혹하다고 보고 분할출원시 원출원 우선권주장 효력 자동승계 도입]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고 출원인의 편의 도모(개정법 제 52 조 제 4 항, 제 5 항).
5. [국내 우선권주장 가능 시기 명확화] 특허결정된 경우에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으로 확대(개정법 제 55 조 제 1 항 제 4 호, 제 8 항, 제 56 조 제 1 항 제 2 호).
6. [분할출원 확대 개념으로 분리출원 제도 신설]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거절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하여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(개정법 제 52 조의 2, 제 59 조 제 3 항, 제 62 조 제 6 호, 제 67 조의 2 제 1 항 제 3 호, 제 84 조 제 1 항 제 4 호, 제 92 조의 2 제 4 항 제 2 호의 2, 제 133 조 제 1 항 제 7 호).
7. [법정실시권 사유 추가]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특허권자를 보호(개정법 제 122 조).